

결 정

2018 - 2011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2.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2월 4일자 A23면 「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마지막 리퍼브 특가할인!」 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6일자 A27면 「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마지막는 리퍼브 특가할인!」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들은 『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내외 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우울증 분노조절 스트레스 트라우마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 강화』 등을 예시하면서 『임상으로 입증한 뇌기능 개선효과』 라고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